산업통상자원부 http://www.motie.go.kr	**보도참고자료**	힘내라 대한민국

배포즉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포일시	2020. 7. 26.(일)	담당부서	포항지진특별법 시행령 제정 TF
담당과장	이재석 팀장(044-203-5895)	담 당 자	조동후 사무관(044-203-5894)

산업부, 「포항지진피해구제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 피해구제 지원 대상, 지원금 결정기준 및 지급 절차, 포항 경제활성화 및 공동체회복 특별지원방안 시행 절차 등 규정 -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는 「**포항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7월 27일부터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입법예고 기간 : '20년 7월 27일 ~ 8월 13일)

○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포항지진 피해구제 지원에 관한 사항 시행('20.9월)**을 앞두고,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 등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❶ **(지원대상 및 피해범위 산정기준) 사망·상해 또는 재산피해** 입은 자를 지원대상으로 하고, 대상별 **피해범위 산정기준**을 규정

❷ **(지원금 결정 기준) 피해유형별 지원금 결정기준**, 지원금 결정시 제외해야 하는 기존 보상금·지원금 종류

❸ **(피해자 인정 및 지원금 지급 절차) 피해자 인정기준**, 신청서류, 사실조사 방법, **지원금 지급**, **재심의**에 관한 사항

❹ **(경제활성화·공동체회복 특별지원방안 시행절차)** 특별지원방안 시행시 **관계 지자체 협의** 및 **피해구제심의위원회 의견**을 청취

※ 시행령 개정안 주요내용은 '붙임1' 참조

□ 산업부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포항주민 등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등의 절차를 거쳐 **9월 1일**부터 **특별법이 시행 되는데 차질이 없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 의견제출 방법은 '붙임2'(5페이지) 참조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산업통상자원부 포항지진특별법 시행령제정 TF 조동후 사무관(☎ 044-203-5894)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포항지진피해구제법 시행령」 개정안 주요내용**

1. 피해구제 지원대상 및 지원금 결정기준

1 피해구제 지원 대상 및 피해범위 산정기준 (안 제11조~제12조)

○ 포항지진으로 인한 △**사망·상해 입은 자**, △**재산피해 입은 자**를 지원 대상으로 하고, 대상별로 피해범위 산정기준을 규정

2 피해구제 지원금 결정기준 (안 제13조, 별표 2 및 별표 3)

○ 피해유형별 **지원금 결정기준**, 지원금 결정시 제외해야 하는 기존 보상금·지원금의 종류를 규정

2. 피해자 인정 및 지원금 지급 관련 절차

1 피해자 인정 및 지원금 지급 신청에 관한 사항 (안 제14조)

○ △법상 피해자 **요건**(포항 거주·경제활동·재산소유) 충족 및 **피해사실 입증** △타 법령에 따라 지진피해에 대해 **지원받은 자를 피해자로 인정**

○ 신청인은 피해자 인정 및 지원금 지급 **신청서에 증명서류**(피해자 요건 해당여부 또는 피해 사실·금액 증명)를 첨부하여 제출

2 피해자 인정 등을 위한 사실조사 (안 제15조)

○ 피해자 인정 등의 결정을 위해 **현장방문, 피해자 면담** 또는 **서류조사** 실시

3 결정·송달 및 지원금 지급 (안 제16조~제17조)

○ 피해구제심의위원회가 피해자 인정 및 지원금 결정시, **결정서 작성** → **결정서 송달**(결정 1개월內) → **지원금 지급**(송달 1개월內)

4 재심의 (안 제18조)

○ 신청인은 **피해 여부·정도의 변화, 중요서류의 추가 제출, 지원금 결정의 명백한 오류** 등의 경우에 재심의 신청 가능

* 신청기간은 피해자 인정 및 지원금 지급 신청기간('20.9월~'21.8월) 종료 이후 (구체적 기간 및 절차·방법은 피해구제심의위원회가 별도로 정함)

3. 포항 경제활성화 및 공동체 회복 특별지원방안 시행 절차

□ 포항시 경제활성화 및 공동체 회복을 위한 특별지원방안 시행시 **관계 지자체 협의**, 피해구제심의위원회 의견 청취 절차를 거침

붙임 2 **포항지진특별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문**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0 - 436호

「포항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7월 27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포항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포항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 제정(법률 제16860호, 2019.12.31. 공포)에 따라 피해구제 지원 및 피해자 인정 등에 관한 사항이 '20.9.1일부터 시행될 예정으로, 피해구제 지원 대상, 지원금 결정기준 등 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포항지진피해구제심의위원회 자문기구 설치 근거 신설(안 제10조)

포항지진피해구제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의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해

자문기구를 설치할 수 있도록 근거 신설

나. 피해구제 지원 대상 및 피해범위 산정기준(안 제11조부터 제12조까지)

피해구제 지원의 대상을 포항지진으로 인한 사망자 또는 상해를 입은 자, 재산상의 피해를 입은 자로 하고, 각 대상별로 피해범위 산정기준을 정함

다. 피해구제 지원금 결정기준(안 제13조, 별표 2 및 별표 3)

피해 유형별로 지원금 결정기준을 정하고, 법 제34조제2항에 따라 지원금 결정시 제외해야 하는 기존 보상금 또는 지원금의 종류를 규정

라. 피해자 인정 및 지원금 지급 신청 등에 관한 사항(안 제14조)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피해자 인정기준, 피해자 인정 및 지원금 지급 신청시 제출서류의 종류, 신청인의 자격, 서류 보완에 관한 사항 등을 정함

마. 피해자 인정 등을 위한 사실조사(안 제15조)

심의위원회는 피해자 인정 여부 및 지원금 결정을 위해 피해현장 방문 또는 피해자 면담 등을 실시하되, 제출받은 서류만으로 결정 가능하거나 심의위원회가 정하는 일정 금액 이하의 경미한 피해를 지원하는 경우 등은 서류조사만 실시

바. 결정 및 결정서의 송달(안 제16조)

심의위원회가 피해자 인정 여부 및 지원금 금액을 결정한 때에는 결정서를 작성하고, 결정 1개월 이내에 결정통지서를 신청인에게 송달

사. 지원금의 지급(안 제17조)

심의위원회는 결정통지서 송달 1개월 이내에 신청인에게 지원금 지급

아. 재심의(안 제18조)

신청인은 피해 여부·정도의 변화, 중요 서류 추가 제출, 지원금 결정의 명백한 오류 등의 경우에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기간은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피해자 인정 및 지원금 지급신청 기간이 종료된 이후로 하되, 구체적인 기간 및 절차·방법은 심의위원회가 따로 정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8월 1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8)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포항지진특별법 시행령 제정 TF
- 전자우편 : mprior22@korea.kr
- 팩스 : 044-203-4787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포항지진특별법 시행령 제정 TF(전화 044-203-5894, 팩스 044-203-478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